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consumer safety

김진윤*

Jin-yoon, kim

권영국**

Young-gook, kwon

1. 서론

제조물책임(PL)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에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의 관점에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제품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제조물책임제도의 문제가 비단 수출기업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사전적으로 충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품질 경영상의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는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및 입법에 따른 효과의 예측, 분석 등의 연구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의 관점에서 제품안전을 위한 설계·제조단계에서의 기업의 구체적 예방대책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아주 미비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측면에서의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살펴보고 소비자와 기업양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최종소비자,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缺陷)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신체·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주체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동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 관동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ieman@netsgo.com)

<표 1>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 대한 견해

책임주체	국가	EC 지침	CE 조약	일본
제조자	○	○	○	○
표시제조자	○	○	○	○
관여제조자				
수입업자	○	○	○	○
판매 · 임대 · 리스업자				
이용제공업자				
운송 · 창고업자				
수리업자				
설치업자				
공급자	○	○		

<표 2> 각국의 PL(제조물 책임)법 제정 시행 현황

No	국가	법률명칭	PL 법리	시행년월일
1	미국	모델제조물 책임법(각주에서 개별의 PL법을 제정)	엄격 책임	1978.10(발표)
2	영국	소비자보호법	무과실 책임	1988. 3. 1
3	독일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	무과실 책임	1990. 1. 1
4	프랑스	결합제조물에 의한 책임 1998년 5월 19일 법률 제389호	무과실 책임	1998. 5. 19
5	이태리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88. 6. 29
6	스페인	결합제조물에 의한 손해에 관한 책임에 관한 법률	무과실 책임	1994. 7. 8
7	네덜란드	제조물 책임에 관한 네덜란드 민법개정법	무과실 책임	1990. 11. 1
8	아일랜드	1991년 결합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91. 12. 16
9	덴마크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89. 6. 10
10	포르투칼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89년 11월 6일 포르투칼 정령383/89호	무과실 책임	1989. 11. 21
11	벨기에	1991년 2월 25일 결합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91. 4. 1
12	오스트리아	결합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1988년 1월 21일의 연방법	무과실 책임	1988. 7. 1
13	스웨덴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93. 1. 1
14	스위스	제조물에 관한 연방법	무과실 책임	1992.10. 9
15	호주	사업행위법(TPA)	무과실 책임	1992. 7. 9
16	중국	산품질량법	무과실 책임	1993. 9. 1
17	필리핀	소비자법	엄격 책임	1992. 7. 16
18	일본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1995. 7. 1
19	한국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2002. 7. 1
20	캐나다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	시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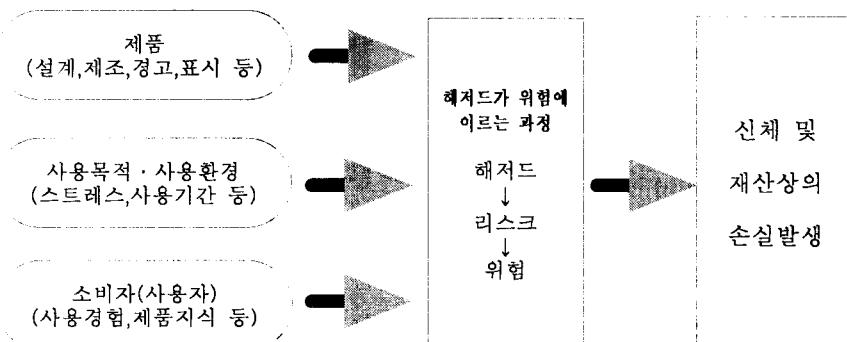
2.1 제조물 책임의 성립요건과 기능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결함있는 제품의 사용으로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③ 위의 결함과 신체적 · 재산적 손실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2.2 제품 결함과 안전

제조물책임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조물책임을 발생시키는데 필요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결함과 하자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밀히 따져보면 하자보다는 결함이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자란 피해발생과는 무관하게 제조물자체의 문제 소지를 잠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 결함의 의미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험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제품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발생과정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과 소비자보호의 관계

3.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입법추진과정

1960년대 초 미국에서 확립된 엄격책임(결함책임)으로써의 제조물책임이론은 19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1980년대에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법의 제정, 시행필요성이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에 제시되는 <표 3>과 같다.

3.2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정부가 2000년 정기국회를 통하여 상정,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될 경우 소비자들의 권익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은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제조물책임의 입법화는 단순히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쉬워진다는 차원을 넘는 것이다. PL법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위험회피 노력과 생산·구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킴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급량 및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 또는 소비자 상호간의 소득분배, 상품의 다양성, 기업의 R&D 활동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조물 책임과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4.1 소비자 측면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거할 수 있는 법리는 민법상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므로, 현재의 여러 가지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을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책임' 혹은 소비자가 가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하는데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법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1994년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제조물 책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제정의 주장을 통하여 2001년 7월 입법예고된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에 즈음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조물 책임과 안전에 대한 조처로써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제조물 책임 입법추진과정

순위	연도	추진 내용
1	1982	김순규위원 등 26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강 시안과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폐기되었음.
2	1989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제조물 책임의 입법을 당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함.
3	1989. 10.	한독법률학회(당시 회장 朴相煥 교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후원으로 한·독·일 저명 판사와 교수를 연사로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에서도 동법의 조속한 입법필요성을 강조함.
4	1989	공업진흥청에서 제조물 책임 입법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국공업표준협회(현재의 한국표준협회)에 의뢰, 동 협회는 같은해 11월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작성, 보고함.
5	1993 말 ~1994	1993년 말부터 1994년 말까지 정부, 소비자보호기관등 각 관련기관에서 제조물 책임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문 및 방송뉴스 보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제조업체 교육기관 등 각 기관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 실시.
6	1994.6.27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제조물 책임세미나를 개최하고 동법의 조속한 입법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입법방향을 제시함. 그리고 10월에는 2회에 걸쳐 국내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의 내용과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함.
7	1994.9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입법안으로 건의한 제조물 책임법이 궁정적으로 수용되어 금년내에 입법될 것으로 추정됨(1994.9.24 한국경제신문 보도 참조)
8	1998.11.13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제조물 책임법 制定"에 관한 공청회 개최.
9	1998.11.22	정부는 경제통제경부 차관보 주재로 소비자보호시책 점검회의를 갖고 "제조물 손해배상법(PL法)"을 내년 국회에 상정,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10	2000. 3.	중소기업청(廳長 韓峻皓)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제(PL)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PL대책 지원사업을 추진.

1) 소비자 인식 제고운동

사고발생 후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도와주는 것 이외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품별로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홍보·교육하여 제품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그릇된 사용을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운동을 전개 할 필요가 있다.

2) 제품안전분석기능의 강화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분석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경고 또는 사용상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제안하여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림 2> 제조물 책임법의 일반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흐름도



3)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강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함의 신고 및 결함의 분석, 해당기업과의 협의, 소송제기 및 수행과 관련한 의문점 해소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기업 측면

1) 설계단계에서의 개선방안

제품의 전단계에 걸친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함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품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품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인 설계 단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2) 제조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사내 체제를 정비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생산 공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미리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공정에서 결함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무결점(ZD : Zero Defect 無缺點) 운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각 공정의 표준작업지침을 작성하여, 제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이론적으로 익히고 체계화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향후 혹시라도 PL제조가 있을 경우, 안전 대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품질규격인 ISO 9000이나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의 하나이다.

5. 결론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될 경우, 연쇄도산·대량실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제 시행에 중소기업들이 사전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PL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반면에, 소비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 1967년에 처

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고, 영문약관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기 이후 해외수출의 신장과 함께 계약실적도 매년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보험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제조물책임보험도 피해자보호 보다는 제조업자 중심으로 운영 하여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것은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선화이며, 제조물책임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거는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그 제도와 더불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 둔 우리나라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을 추후 연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명진,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위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2.
공업진흥원, 「제품안전과 제조물책임제도」,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 1996, p.97.
권영국, 「산업안전공학」, 서울 : 형설출판사, 2000, p. 656.
권영준, “제조물책임의 계약법적 구성”, 안동대론문집, 1982, 4호, p. 3.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1994. 9, p. 29.
김상협,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20-21.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158.
김영훈,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위한 소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46.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기술, 1994. 9., p.73.
연기영,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리 현황”, 「조사연구자료」 제15권, 보험개발원, 1993, p.5.
이경주, “제조물책임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22.
이영환, “자동차사고와 제조자책임”, 「월간고시」 1987. 7., p. 57.
이은영, 「채권각론」(서울 : 박영사, 1989), p. 669. : 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p. 3.
이종인, “생산물책임 원칙이 제품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12-14.
장용진,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기업의 입장」, 소비자 제170호, 1995. 8., p. 35.
지수현, 「제조물책임의 입법과 보험의 의무화 문제」, 신경영연구, 1995.
최병록, 「PL대책 및 PL보험」 한국 PL법 연구원, 1997, pp.3-44.
하종선, 최병록, 「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한국공업 표준협회, 「제조물책임」, 1996, p. 73.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1989. 11.30.
Peter Asch, “Consumer Safety Regulation”, Oxford Univ. Press, 1988, p.133.
Riswardka, A. V., “Safer Products, Fewer Claims”, Bests Review, Vol. 90, No. 1, May, 1989, p. 183.
Jeffrey G. Meyer, “기업위험의 형태와 관리방안”, 현대해상화재보험(주), Risk Management Seminar 자료집, 1989, p. 48.
[Http://europa.eu.int/comm/dg24/policy/developments/acce-just02_en.htm](http://europa.eu.int/comm/dg24/policy/developments/acce-just02_en.htm)
[Http://www.kplc.or.kr/](http://www.kplc.or.kr/)
[Http://www.pllawyer.co.kr/](http://www.pllawyer.co.kr/)
[Http://telnet.plkorea.co.kr/html/menu6/internal/export.html](http://telnet.plkorea.co.kr/html/menu6/internal/export.html)